

#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715
------------	-----

제출 년월일 : '98. 11.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 제정이유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간(단기)보호 및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보호시설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낮시간의 보호,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등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 기능을 수행한다(안 제3조)
- 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호시설장의 보호입소 판단 및 입소허가를 받은 자 만이 입소할 수 있다(안 제5조)
- 보호시설의 장은 1인당 1일 5,000원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특별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안 제7조)
- 시장은 장애인의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안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안 제8조)

##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덧붙임
- 준 칙 안 : 경기도 사회 65140 - 438호 ('97. 3. 10) - 덧붙임
- 예산수반사항 : '97. 1회 추경에 확보하였음 ('98명시이월사업)
  - 사업비 ————— 348,000천원 (도비 70%, 시비 30%)

○ 기타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사항)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
  - 위치 : 초지동 604-10 (장애인재활작업장내)
  - 규모 : 100평
  - 인원 : 10인 이상
  - 사업기간 : '98. 2. ~ '98. 12

○ 사전 절차

- 입법예고 : '98. 10. 8 ~ 10. 27. (20일간)

##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안산시 초지동 604-10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가장애인에 대한 낮시간 동안의 보호 또는 6일이내의 단기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업무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을 위한 업무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소자격) ①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어서 보호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실비징수) ①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의 실질경비를 보호대상자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장에 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감독등) ①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①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15
------------	-----

제안년월일 : 1998. 12. 22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외 6인

### 1. 수정이유

- 조례안 중 보완할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이를 보완 수정 코자 함.

### 2. 주요골자

- 안 제8조 제1항 중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시장은 보호시설을”로 한다.
- 안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 수익금,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보호시설의 운영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1항중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시장은 보호시설을”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내지 제11조로”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 제1항 중 “할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호대상자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 수익금,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보호시설의 운영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수정안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  .....  .....  .....  .....</p> <p>② (원안과 같음)</p> <p>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 수익금, 보조금 및 시용재산을 보호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p> <p>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p>

원 안	수 정 안
제9조 (감독등) ①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 ④(생략) 제10조 (시행규칙) (생략)	제10조 (감독등) ①..... .....하여야 한다. ② ~ ④ (원안과 같음) 제11조 (시행규칙) (원안과 같음)